

법무상식

<http://www.jeonnam.go.kr>

C·O·N·T·E·N·T·E·S

2017년 8월 통권 제298호

새로운 판례	2
행정심판 재결사례	19
법령해석사례(법제처)	31
유용한 생활법령정보	67
법무단신	73
제·개정된 주요 법령내용	85

생활에 유익한 법무상식

새로운 판례



◆ **택배 상·하차 작업 중 쓰러져 뇌출혈로 숨진 망인의 유족이 근로복지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취소하고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유족의 향소**

* 부산고등법원(2016누21046)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동료 직원의 사직과 일일배송량 증가 등으로 인해 업무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지속적인 과로에 시달리다가 상병 발생 당일 상차작업 과정에서의 격무로 인해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망인의 주된 업무내용은 무거운 화물을 상·하차하는 것과 화물트럭을 야간에 운전하는 것이었으며, 그 업무형태도 오후부터 야간에 이르는 주야근무로서 별도의 휴게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것이었다. 이와 같이 중량물을 다루는 업무내용은 비교적 왜소한 체구의 망인에게는 상당한 육체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육체적 부담은 야간근무와 휴게시간의 부족 등으로 인해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4년 8월 15일과 2014년 9월 6일에 망인과 한 조를 이루어 상·하차 작업을 담당하던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였으나 인원보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이후 망인은 동료직원 1인의 간헐적인

도움만을 받는 상태에서 3인 1조로 이루어지던 상·하차 작업을 혼자 담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망인의 업무량 및 업무강도는 크게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014년 9월경에는 추석을 전후하여 소외 회사의 일일배송량이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이로 인해 망인의 업무량 및 업무강도는 더욱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2014년 9월 14일은 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8시간 30분의 주야근무를 마치고 2014년 9월 15일 02시30분경 퇴근하였다. 망인은 2014년 9월 15일 14시00분경 소외 회사에 다시 출근하여 1차레 물류 운송작업을 마친 다음 당일 20시00분경부터 상차작업을 하였는데, 상차작업을 하던 도중인 21시30분경 트럭 위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다. 망인이 상차작업 도중 쓰러진 당일의 일일배송량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의 일일배송량 중 최고수치를 기록한 날이었다.

④ 망인은 생전에 건강검진을 받거나 병원진료를 받은 바 없으므로, 건강검진기록 등을 통해 기저질환을 확인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고혈압은 뇌출혈의 주요한 위험인자이며 전체 자발성 뇌출혈의 75% 이상이 고혈압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위 협회 소속 의사는 망인의 출혈부위를 보면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크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에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그 정도를 알 수는 없으나 망인에게는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통상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경우 일시적인 혈압 및 혈류량의 증가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신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뇌출혈 등 비가역적인 신체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망인은 트럭 위에서 중량물을 끌어올리는 상차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상차작업 도중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도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혈압 및 혈류량의 증가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의정부시가 식재한 가로수를 임의로 벌채하여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한 사례**
*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17)**

이 사건 가로수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산을 침해하는 등 문제가 있더라도 그 재물로서의 가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하여 자력구제가 가능한 경우도 아니다. 이 사건에서의 문제는 피고인이 당장의 권리 침해나 공공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가로수를 전부 잘라버린 데 있다. 피고인이 통화를 한 담당 직원 개인에게는 이러한 가로수 제거를 승낙할 권한이 없고, 그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뿌리와 가지를 일부 제거하는 등으로 당장의 침해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가로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승낙하는 취지로 이해하기 어렵다. 담당 직원들이 뿌리 제거 작업을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은 이 사건 가로수가 밑동밖에 남지 않아 이미 가로수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2016년 6월 6일경 이후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방법으로서의 상당성이나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다만 국가기관 소유 가로수로 인하여 피고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적시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스스로 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공공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지출하기까지 하였으니, 가로수 손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중한 책임을 묻거나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양형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가 불법적으로 신축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중개하였고, 분양 관련 법률관계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 광주지방법원(2016가단520626)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 이○○는 위 중개행위 당시 광주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였고(을가 제1호증),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부동산공인중개사 대표 이○○’로 기재된 명함(갑 제9호증)을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하였으며,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2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이○○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와의 중개위임계약에 따라 중개행위를 한 이상 구 공인중개사법 소정의 ‘중개업자’에 준하는 내용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이○○는 원고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중개 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신의성실로써 중개 의뢰인이 계약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될 수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인 원고에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 피고

이○○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중개할 당시 이 사건 사업 부지는 이미 이 사건 신탁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대외적으로 공시된 신탁원부를 통해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A도시개발과 이 사건 신탁회사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던 점, (b)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대한 신탁등기상 신탁원부에 첨부된 ‘분양관리신탁계약서’ 제3조 및 제6조는, 이 사건 사업 부지 및 향후 완공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도 이 사건 신탁회사에게 추가 신탁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신탁회사만이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를 관리하면서 분양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사업 부지 및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일정한 권리제한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c)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19조에서 A도시개발이 이 사건 신탁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분양대금이 관리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22조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의 관리신탁사는 ‘이 사건 신탁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 이○○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신탁회사에 이 사건 사업약정이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이나 그 권리관계 및 법률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호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하였던 점, (d) 일반에게 공개되었던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안내문에도 분양대금을 이 사건 신탁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고 안내되었는바, 피고 이○○로서도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탁회사 명의의 분양대금 관리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e) 피고 이○○는 중개행위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분양권 행사주체 및 분양대금 납부방법, 이 사건 분양계약의 효력 유무 및 이 사건 오피스텔의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하였던 점, (f)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 사건 신탁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었고, 이 사건 오피스텔 ○○○호에 관하여 2016년 4월 20일 소외 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피고 이○○의 중개행위는 위임계약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이○○는 위임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호를 취득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이 사건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2015헌마1094)

1. 피청구인이 2015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1월 15일까지 2015 인구주택총조사의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면서, 담당 조사원을 통해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작성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의 조사항목들에 응답할 것을 요구한 행위(이하 '심판대상행위'라 한다)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심판대상행위의 근거법률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심판대상행위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심판대상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은 시의성을 가지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직접 정해야 하는 불변의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인구주택총조사의 모든 조사항목을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 규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심판대상행위는 통계법 제5조의3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은 사회·경제 변화상의 반영, 국제비교, 시계열 유지, 조사가능성, 응답자 편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므로, 그 사항을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개방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관련 법조항, 인구주택총조사가 추구하는 목적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결국 통계법 제5조의3 제2항에 의하여 하위법령에 규정될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사항은, 개인정보에 속하는 것들로서 ‘인구 특성, 인구이동, 경제활동, 가구 특성, 주택 특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당시 인구 및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통계법 제5조의3 제2항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행위는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심판대상행위는 방문 면접을 통해 행정자료로 파악하기 곤란한 항목들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사회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과 각종 정책수립, 통계작성의 기초자료 또는 사회·경제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15일이라는 짧은 방문 면접조사 기간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 인근 주민을 조사원으로 채용하여 방문면접 조사를 실시한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 된다. 201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의 조사항목들은 당시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저출산, 고령화, 변화하는 가구, 사회의 다양화와 통합, 주거복지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자 자녀 출산 시기, 일상생활 및 사회 활동 제약, 결혼 전 취업 여부, 경력단절 항목 등을 신규로 추가하였고, 기존의 조사항목 중 불필요한 항목들(수도 및 식수 사용 형태,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현황, 교통수단 보유 및 이용 현황)은 폐지하였으며, 나머지 항목들은 시계열 축적을 통해 통계자료로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유지하였다. 또 조사항목 52개 가운데 성명, 성별, 나이 등 38개 항목은 UN통계처의 조사권고 항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범세계적 조사항목에 속한다. 한편,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낮 시간에는 응답자가 부재중인 경우가 빈번하고, 오늘날 직장인이나 학생들의 근무·학업 시간,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된 현대사회의 생활형태 등을 고려하면, 출근 시간 직전인 오전 7시 30분경 및 퇴근 직후인 오후 8시 45분경이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기에 불합리할 정도로 이르거나 늦은 시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관련 법령이나 실제 운용상 표본조사 대상 가구의 개인정보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심판대상행위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피청구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불이익인 반면 심판대상행위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그 조사결과를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사익 제한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 따라서 심판대상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였다는 사정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2015두50290)

일반적으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재산을 양수한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이다. 따라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뒤의 연대납부책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813 판결,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698 판결 등 참조). 반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2 제1항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는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일반적인 증여세 및 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구 상증세법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목적과 효과를 부정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면서부터 일반적인 증여세와 달리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지 아니하여도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고, 제4조 제1항 단서에 후단을 신설하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있어서는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더라도 실제소유자가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은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구 상증세법 제4조의 개정연혁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비록 과세처분에 의하여 그러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명의수탁자에 관한 사항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였음에도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명의수탁자의 증여세와 같은 액수의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으로, 명의수탁자 측의 그러한 사정은 원고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임.

◆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의 해석방법 등**
 * 대법원(2016도3185)

1. 주요방위산업체의 원활한 가동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서 법률로써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은 있으나,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 제한입법에 관한 최소침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됨으로써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방위사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주요방위산업체를 개별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은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운데에서도 전력, 용수 및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위에서 본 법해석 원칙에 기초하여 위 법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목적을 종합해 보면,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그 사업의 일부를 사내하도급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 맡겨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 그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하도급업체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 근무하면서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노무를 제공한다는 사정만으로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독립된 사업자인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하도급업체인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주요방위산업체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특수선 사업부에 소속된 사내협력 업체에 소속되어 특수선의 도장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의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적용법조로 기재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오기이거나 법률 적용의 착오이고 이에 따라 법원이 그 적용법조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으로 바로잡아 심리판단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본 사례
* 대법원(2013도7896)

1.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매월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이 곧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로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위반 죄는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 1959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2006년 발생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가지급일인 2008. 2. 7.경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피고인이 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 중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오기이거나 법률적용의 착오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사실과 심리의 전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법조를 바로잡는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하기도 어렵다.

2. 근로자의 쟁의행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어느 시점 이후에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5335 판결 등 참조).

직장폐쇄 기간 중 조합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점, 조합원들이 제출한 자필 ‘근로의사표명서’의 진정성을 의심할 근거가 없고 피고인은 그 진의 확인을 위한 면담 등의 절차를 진행한 적도 없는 점, 경남제약이 직장폐쇄 철회를 거부한 이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07. 12. 28. 이후의 직장폐쇄는 경남제약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방어수단을 넘어선 것이고, 피고인이 조합원들의 개별적 근로의사표명이 시작된 2007. 12. 28. 이후에도 계속하여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할 의사에 기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여기에 부수되는 개개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하여야 하므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마저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등 참조).

4. 피고인이 조합원들에 대한 2008년 하기휴가비와 2008년 추석상여금은

출근율에 비례하여 일부만 지급한 반면, 직장폐쇄가 철회된 이후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들에게는 근무기간이 채 4개월이 되지 않았음에도 그 휴가비나 상여금 전액을 지급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2014다32458)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통상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중지시키거나 일정 기간 담보권 실행을 못하게 하는 한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궁극적으로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밟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피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채무자에게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채권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채무자가 배당절차에서 이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익을 제기하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원용하였다면, 시효의 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이와 달리 채무자가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한 사정이나, 채무자가 직접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 이익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중시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각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

◆ 모진 간병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위탁교육훈련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본 사안
* 장원지방법원(2016구합52819)

가. 위탁교육훈련비의 환수 대상이 고의적 미이행 및 불성실 대상자에 한정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이 국내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게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복무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는 공무원 신분으로 위 기간 동안 근무를 통해 교육의 성과를 환원·공유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는 제34조 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비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가 복무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사람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복무의무 면제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교육 훈련을 받은 공무원에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복무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운 경우를 ① 장기교육훈련기간 중 당해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육을 중단한 경우, ② 의무 복무기간 중 조직정원의 폐지에 의한 직권면직,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본인의 귀책사유로 파면, 의원면직 된 경우는 교육비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원고 자신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복무의무를 면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모친의 간병을 위하여 명예퇴직 하였다는 사정은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매매 토지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 광주지방법원(2016나6824)

1. 위와 같은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에 쓰레기 등이 매립되어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매매 당시 교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어느 부분에도 이 사건 토지에 쓰레기 등이 매립되어 있다는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 원고는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데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는 중요한 사항이었던 점, ㉢ 원고가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쓰레기 등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더라면 매매대금의 감액요청을 하는 것이 경험칙상 예상되는데도 위와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달라거나 매립된 쓰레기 등의 현황을 정확히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 당시 원고 또는 허○○는 이 사건 토지에 쓰레기 등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임○○은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음을 알렸고, 이러한 사정을 매수인에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중략) ⑤ 만일 원고나 허○○가 위와 같은 사정들 피고로부터 제대로 설명받았다더라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거나 적어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조건으로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다량의 쓰레기 등이 매립되어 있다는 사정들 알면서도 이를 원고나 허○○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쓰레기 등 처리작업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고 착각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업무상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아닌 허○○에게 이 사건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허○○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허○○ 외 1인’이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임○○이 ‘1인’이 누구냐고 묻자 허○○는 ‘동생’이라고 말하였는데, 원고는 허○○의 동생인 점, ②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2014년 3월 26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③ 원고는 2014년 3월 26일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 원 등으로 이 사건 매매 잔금 2억 3100만 원을 임○○에게 본인 명의로 송금하였고, 2014년 3월 31일 이 사건 매매 중개에 대한 중개수수료도 피고에게 본인 명의로 송금한 점, ④ 피고가 2014년 11월 11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중개상의 과실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그에 따른 민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새로운 소송을 하는 데 필요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220만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도 이 사건 매매를 허○○를 포함한 원고에게 중개하였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는 허○○와 원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매매의 중개를 시작하였다가 매수인이 원고로 확정되면서 원고만을 위한 중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생활에 유익한 법무상식

행정심판 재결사례



【2017-117,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 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04. 17. 청구인에게 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5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04. 17. 청구인에게 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시 00길 00에서 '000'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7. 02. 20. 19:30경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00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이 2017. 04. 17.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2017. 4. 29 ~ 2017. 05. 28.) 처분을 하자, 2017. 04. 2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04. 17. 청구인에게 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청구인은 종업원의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청구인의 잘못에서 기인하였기에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함이 없으나, 이 사건의 사업장은 청구인과 대리인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장이며,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청구인 아들인 대리인이 도맡아 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사업장은 청구인과 대리인 가족의 생계수단이기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집행되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감경처분의 재결을 구함.

나. 피청구인

청구인은 과거 2015년과 2016년에도 이 사건 동일 업소에서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00경찰서 단속반에게 적발된 후 종업원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되었으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의 사건처분결과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처분되어 위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피 청구인이 영업정지 행정처분 예정사실을 취소한바 있는 업소로, 이후 종업원들에 대해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기에 재차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게 되었으며,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기 감경처분 해주었기에 청구인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여 주었다고 판단되며, 청구인뿐만 아니라 대리인 가족의 생계수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며, 아울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 것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이 입을 경제적 손실보다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공익적 이익이 우선하여야 하며,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법규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본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 1)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 제1항 제13호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관련 [별표1]

-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
- 4)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제28조 제1항
- 5)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조

5. 판 단

가. 사건경위

- 1) 00경찰서장은 2017. 2. 20.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2017. 2. 23.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을 통지하였다.
 - 위반내용 :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 2) 청구인은 2017. 3. 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사법기관 처분 시까지 행정처분 유보 요청
- 3) 피청구인은 2017. 3. 10. 청구인이 사법기관 최종판결 시까지 행정처분 유예 요청에 따라 “행정처분 유예”를 통보하였다.
- 4) 00경찰서장은 2017. 3. 27. 피청구인에게 수사결과(기소의견)를 통보하였고, 광주지검 00지청은 2017. 4. 7. 피청구인에게 사건처분결과를 회신하였다.
 - 처분내용 : 2017형제000호, 기소유예
 - 처분일자 : 2017. 3. 28
- 5) 피청구인은 2017. 4. 17.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다.
 - 영업정지 1개월(2017. 4. 29. ~ 2017. 5. 28.)
- 6) 청구인은 2017. 4. 25.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같은 달 25일.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며,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4. 27.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

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1/2을 감경할 수 있다.

2) 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적발보고서, 청구인의 진술서, 의견제출서 및 심판청구서 등을 통해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보면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일응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만, 행정청이 위 법규 소정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경위나 위반의 정도, 행정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따져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3) ① 청구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적발이후 청구인이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점, ③ 순천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④1개월간 영업을 중단될 경우 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월세(220만원) 지불이 곤란하고 청구인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할 것을 감안하여 살펴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이루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과중하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7-12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4. 26.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9.부터 00시 00면 00로 000에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운영하는 자로, 2017. 2. 7. ~ 2. 13. 기간 00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암롤박스 8대 분량, 약 70톤)을 적절한 처리장소(처리업체)에서 처리하지 않고 청구인의 사업장에 보관한 사실이 같은 달 14.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7. 4. 26.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처리업체의 처리지연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반입을 못하였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4. 26.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1)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00현장에서 다량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수집운반업체에만 떠넘기는 행정처분이다.

2)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1항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던 중 발생한 일이며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처리업체의 불성실한 태도와 잦은 반입금지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고, 피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3항을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고 의견 진술할 시간과 기회도 없이 바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행정편의주의 처사로 밖에 생각되어지지 않는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다.

나. 피청구인

1) 폐기물관리법은 이 사건 행정심판과 관련한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해당사항 없는 법률이며,

2) 청구인은 2011년 “폐기물 보관 장소 외 보관”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2012년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2013년 폐기물 영업구역 이탈, 2016년 폐기물수집운반업 무허가 등 4번의 환경법을 위반하는 등 지속적인 관련법 위반이 있었으며, 금회 위탁받은 70여톤의 폐기물을 적정처리장소 외로 운반하여 처리완료시(2017. 2. 15. ~ 2017. 2. 24.)까지 최장 17일까지 차고지에 불법 보관하여 왔으며,

3)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의 처리지연 및 반입불가로 불가피하게 차고지에 보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폐합성수지 처리업체가 관내 8개소, 전라남도 내 95개소로 폐기물처리업체 처리 지연시 대체할 처리업체가 다수 존재하여 폐기물 적정처리가 가능하며 해당이유가 폐기물의 불법 운반 및 보관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적절한 장소외의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여 장기간 보관한 사례를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다 볼 수 없으며, 사전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2017. 4. 2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시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적법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4. 관계법령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7항 제3호, 제25조 제6항, 제66조 제1항 제7호,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7호, 제30조, 시행규칙 제15조의2

5. 판단

가. 사건경위

- 1) 피청구인은 2017. 2. 14. 청구인 사업장에 다량의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다는 민원제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 차고지 내 폐기물보관량 : 암롤박스 8대
 - 폐기물 운반(배출) 장소 : 0000 공사현장
 - 보관 폐기물 반입일 : 2017. 2. 7. ~ 2. 13.
- 2) 피청구인은 2017. 2. 17. 청구인에게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 3) 청구인은 2017. 2. 24. 차고지내 보관하였던 건설폐기물 약 70여톤을 처리하였다.
- 4) 청구인은 2017. 2. 28.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의견을 제출하였다.
- 5) 피청구인은 2017. 4. 26. 청구인에게 건설폐기물법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017. 4. 28. ~ 5. 27.)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7항 제3호는 폐기물을 적정처리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전부를 건설폐기물 처리장소가 아닌 청구인 사업장으로 운반하여, 적정처리장소외의 장소에 보관한 사실이 명확한 점, ② 청구인은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약 13년 이상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여 오면서 4차례 위반전력이 있으며, 이 중 이 사건 처분과 유사한 위반 전력(폐기물 보관 장소외 보관)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더 큰 노력을 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될 청구인의 사익보다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고자 환경을 보호하여야 하는 공익이 더 클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7-13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17. 5. 1.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531,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이행강제금 265,000원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5. 1.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531,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지상의 목조시멘트 기와지붕 단독주택(1층, 49.58㎡)의 소유자로서, 무단 증축한 마당차양 12평방미터 부분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 5. 1.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531,000원)을 부과하자, 이 사건 무단 증축부분을 모두 자진하여 철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임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5. 1.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청구인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인 2017. 4. 23.경 무단 증축한 건축물의 1/2이상을 자진철거하고 일부 철거할 당시 담당공무원에게 나머지 무단 증축한 부분도 조만간 자진철거 하겠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2017. 5. 11.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를 받은 날 나머지 무단 증축 부분도 모두 자진 철거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수차례 청구인에게 불법 증축부분을 이행 강제금 부과 전에 자진 철거하도록 안내하였으나, 2017. 4. 24.까지 위반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2017. 5. 23. 현장 확인결과 불법 증축부분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 1) 「건축법」 제14조, 제79조, 제80조
- 2)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 3) 「00시 건축 조례」 제36조 관련 [별표3]

5. 판 단

가. 사건경위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증거서면 등 기타 관련 자료들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소유 ○○시 ○○동 ○○번지 지상 목조시멘트 기와지붕 단독주택(1층, 49.58㎡)의 마당 차양 12평방미터를 무단 증축하여, 2016. 12. 7. 「건축법」 제14조 위반 건축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 대해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시정요구(3차)하고, 2017. 3. 21. 처분 사전예고 및 의견제출 요구서를 통지하였다.

- 2016. 12. 7. 1차 시정요구(시정기한 2017. 1. 9.까지)
- 2017. 1. 11. 2차 시정요구(시정기한 2017. 2. 13.까지)

- 2017. 2. 16. 3차 시정요구(시정기한 2017. 3. 17.까지)
- 2017. 3. 21. 처분 사전예고(시정기한 2017. 4. 24.까지)

※ 청구인 의견제출 없음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 하였다.

- 이행강제금 : 531,000원
- 부과사유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 위반내용 : 목조 12m²

4)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후 위반 건축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철거사실을 확인하였다.

- 출장일시 : 2017. 5. 23.
- 확인내용
 - 현장 확인결과 불법증축 일부를 철거함
 - 기존 위반사항 및 면적 : 목조 6m² → 철거 / 목조 6m² → 존치
- 출장자 의견
 - 현장이 일부 철거되었으나 완전히 시정이 되지 않아 재차 시정예고 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자 함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이행강제금은 위법부분의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행을 강제하고, 불법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수단으로서 위법부분에 대한 시정이 가능한 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청구인에게 시정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② 청구인 주택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여 「○○시 건축 조례」 제36조 관련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부과되어 이행강제금의 감경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며, ③ 「건축법」 제80조 제6항은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더라도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이 없다 할 것이다.

3) 다만, 행정청이 위 법규 소정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경위나 위반의 정도, 행정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따져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하여야 하는바, ① 청구인의 무단 증축 행위는 단독주택 마당차양 12제곱미터에 불과한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일 전에 일부 자진철거를 위해 노력하였던 점, ③ 홀로 거주하는 고령(85세)의 노인이 주거환경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위반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이루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과중하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생활에 유익한 법무상식

법령해석사례(법제처)



사 례 1

전라북도 부안군 -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어선등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가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이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다시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업법」 제44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이하 “어선등”이라 함)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함. 이하 같음)가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함. 이하 같음)고 규정하고 있고,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한 자가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어선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기간 중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어선의 임대인은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다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어선을 이용하여 다시 어업활동을 하려면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회 답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한 자가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어선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기간 중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어선의 임대인은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다시 어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유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등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가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한 자가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어선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기간 중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어선의 임대인은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다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어선을 이용하여 다시 어업활동을 하려면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어선 등의 임차로 인해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상실한 어선 등의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기간 중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어선 등의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같은 항 전단에 따라 다시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해당 규정에서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사유로서 상속, 매입, 임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어선 등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기간 중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해당 규정의 “임차”에 포함된다면 그러한 경우 임대인이 다시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 어선 등을 임차하는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어선 등을 임차할 때마다 어업인들이 새로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개정되어 2010. 4. 23. 시행된 「수산업법」 국회 검토보고서), 허가받은 어선 등의 임차에 따라 그 사용권이 임차인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선 등의 임차인에게 새롭게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신고만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임대차기간의 만료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 해지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대인이 어선 등의 사용권을 다시 회복하는 경우에도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의 “임차”의 의미를 넓게 보아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임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서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사유로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의 상속, 매입, 임차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문언해석상 “임차”에 임대차기간의 만료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 어선 등의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의 “임차”의 의미를 좁게 보아 어업허가 지위승계 사유를 한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어선 등의 임대인이 다시 어업활동을 하려면 새롭게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당초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에서 광역시·도·특별자치도별 허가 정수를 규정하고 있는 연안어업의 경우에는 신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정수가 남아 있지 않다면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어선 등의 임대인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한 자가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어선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차기간 중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어선의 임대인은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다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 례 2

민원인 - 동·호수 추첨 전의 아파트 입주권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조제2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중개”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이하 “중개대상물”이라 함)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중개대상물을 토지(제1호),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제2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제1호)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제2호)을 중개대상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8조제1항 본문에서는 정비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 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아파트 동·호수 추첨 전에 입주권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입주권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 회 답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아파트 동·호수 추첨 전에 입주권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유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중개대상물을 토지(제1호),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제2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제1호)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제2호)을 중개대상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 본문에서는 정비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 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아파트 동·호수 추첨 전에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입주권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제3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중개대상물을 토지,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및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정비법의 정비사업에 따른 “입주권”은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는바(「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등 참조), 이 사안에서 입주권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제3조제2호에서 중개대상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 “기존 건축물”에 한정되는지, “장래 건축될 건물”도 포함되는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란 중개를 업(業)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등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고(제2조제1호), 법령에서 특정 물건이나 권리에 대하여 양도 등 거래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당사자는 사적자치에 따라 자유롭게 거래(계약)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인중개사법」 제3조제2호에서 중개대상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매매나 임대차 등의 거래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으면 될 것이지, 반드시 중개가 이루어질 당시 건축물로서의 외형까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885판결례 및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판결례 참조 참조).

다만, 「공인중개사법」 제22조에서는 중개의뢰인이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제1호), 거래예정가격(제2호) 등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제1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제2호)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인중개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그 위치, 상태, 시장거래가격 등이 특정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치, 상태 등이 특정되지 않는 건축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아파트 동·호수 추첨 전에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입주권은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건축물의 위치, 상태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향후 아파트 동·호수 추첨을 거쳐서 해당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될 수 있는 지위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 1287 판결례 참조),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아파트 동·호수 추첨 전에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사 례 3

민원인 -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대상자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 등(「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등 관련)

● 질의요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이하 “부실금융회사 등”이라 함)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부실금융회사 등의 전직·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부실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전직·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함) 및 그 밖의 제3자를 말함. 이하 “부실관련자”라 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에서는 공사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부실금융회사 등,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부실관련자의 배우자, 부실관련자의 직계 존속·비속, 부실관련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재산권을 목적으로 부실관련자와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은 자 및 전득자, 그 밖에 부실관련자의 재산 은닉에 관련이 있는 자를 말함. 이하 같음)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출석요구(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제외함. 이하 같음) 등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제2항에서는 공사가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자의 인적 사항 등 같은 법 제21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 금융위원회 또는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예금보험위원회등”이라 함)가 부실금융회사 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도 포함되는지?

나.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 같은 항에 따른 조사 당시에는 채무를 본래의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채무자이기는 하나 그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의 평가액이 채무액을 현저히 상회하여 장래에 채권자가 해당 담보물을 매각할 경우 채무가 완전히 변제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채무자도 포함되는지?

다.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과세정보”가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인정된 부실관련자나 그 이해관계인의 것으로 한정되는지?

● 회 답

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는 예금보험위원회 등이 부실금융회사 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도 포함됩니다.

나.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 당시 채무를 본래의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채무자라면 그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의 평가액이 채무액을 현저히 상회하여 장래에 채권자가 해당 담보물을 매각할 경우

채무가 완전히 변제될 수 있는 상태에 있더라도 포함됩니다.

- 다.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과세정보”가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인정된 부실관련자나 그 이해관계인의 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유

가. 질의 가, 질의 나 및 질의 다의 공통사항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공사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부실금융회사 등,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출석요구 등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는 공사가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자의 인적 사항 등 같은 법 제21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 예금보험위원회 등이 부실금융회사 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실관련자”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공사의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조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해당 부실관련자가 같은 항에 따른 요건, 즉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는 부실관련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려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가15 결정례 참조),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사 대상자로서의 “부실관련자”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상자로서의 “부실관련자”의 범위는 전자의 경우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에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어 조사가 필요한 단계이고 후자의 경우 그 조사 결과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단계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같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통하여 금융구조 조정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고 유사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의안번호 제152367호 및 제160374호 예금자보호법 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각 참조), 이는 채무자가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의 불법대출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대출을 받는 등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부실금융회사 등은 채무자에게 불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데(대구지방법원 2007. 1. 11. 선고 2006고단5065 판결례 및 같은 법원 2009. 11. 19. 선고 2007노416 판결례 각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같은 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예금보험위원회 등의 부실금융회사 등 결정 시점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당 채무자의

범위에는 예금보험위원회 등이 부실금융회사 등으로 결정하기 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결정 이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4. 10. 회신 17-0125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에는 같은 조 제1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금보험위원회 등이 부실금융회사 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공사는 해당 채무자가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면 같은 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는 예금보험위원회 등이 부실금융회사 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내에 대하여

이 사안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 같은 항에 따른 조사 당시에는 채무를 본래의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채무자이기는 하나 그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의 평가액이 채무액을 현저히 상회하여 장래에 채권자가 해당 담보물을 매각할 경우 채무가 완전히 변제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채무자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채무불이행이란 예컨대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거나(이행지체) 목적물이 멸실되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이행불능), 채무를 이행하였으나 그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불완전이행) 등 채무를 그 본래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렇다면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의미는 그 문언상 같은 항에 따른 조사 당시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채무가 본래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모든 채무자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해당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의 평가액이 채무액을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라도 그 조사 당시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이상 같은 항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에서 부실관련자의 범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포함하고 있는 이유는 공사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부실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부실을 초래한 채무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하고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율을 높이려는 것인바(의안번호 제152367호 및 제160374호 예금자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각각의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라면 해당 채무가 장래에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사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실금융회사 등이 채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대출과정에서 있었던 채무자의 불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대구지방법원 2007. 1. 11. 선고 2006고단5065 판결례 및 같은 법원 2009. 11. 19. 선고 2007노416 판결례 각 참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여부는 해당 채무자의 대출채무의 변제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 본문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사 당시 채무를 본래의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채무자라면 그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의 평가액이

채무액을 현저히 상회하여 장래에 채권자가 해당 담보물을 매각할 경우 채무가 완전히 변제될 수 있는 상태에 있더라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라. 질의 그에 대하여

이 사안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과세정보”가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인정된 부실관련자나 그 이해관계인의 것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예금자보호법」에서는 공사는 부실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21조의2제1항), 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에 필요하면 ① 공사가 직접 해당 부실금융회사 등,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출석요구 등 조사를 하거나(제21조의2제7항), ②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장에게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과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제21조의3제1항), ③ 납세자의 인적 사항 등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제21조의3제2항), ④ 공사의 사장은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등”이라 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실관련자의 손해배상책임이나 부실관련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재산은닉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부실관련자(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 중 그 밖의 제3자는 제외함) 또는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제21조의4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7항에 따른 조사와 같은 법 제21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재산·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나 과세정보의 제공요구 및 같은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요구는 모두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요구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 등을 수집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할 것이므로, 그 조사 대상자나 과세정보의 대상자 등의 범위도 원칙적으로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같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대상자로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대상자로서의 “납세자”도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의안번호 제1902167호 예금자보호법 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또한,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른 조사와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제2항에 따른 재산·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나 과세정보의 제공요구 및 같은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요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 부실관련자가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공사가 부실관련자 등을 조사하거나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과세정보의 제공 등을 요구하는 시점에서는 해당 부실관련자에게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 즉 부실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인정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부실에 관련되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가15 결정례 참조).

따라서,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과세정보”가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인정된 부실관련자나 그 이해관계인의 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사 례 4

국민안전처 - 행정구역 미정으로 인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없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5호에서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에서는 “해수면”을 바다의 수류나 수면으로, “내수면”을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지지 않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

● 회 답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지지 않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유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5호에서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에서는 “해수면”을 바다의 수류나 수면으로, “내수면”을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없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해양경비안전서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졌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해양경비안전서장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권한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은 원래 바다에 해당하는 구역에 방조제를 건설한 후 매립을 통해 최종적으로 토지 또는 내수면이 되어가는 지속적인 변화 과정을 거치고 있어 매립의 진행 상황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상이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0추73 판결례 참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수상레저활동 관련 행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등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에 기여하려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해양경비안전서장이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지지 않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행정구역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지지 않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중 해수면과 내수면의 구분이 불분명한 구역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 례 5

민원인 - 행정사가 가맹거래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를 규정하면서,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제28조제2호 및 제6호에서는 가맹거래사가 수행하는 업무로 정보공개서의 작성·수정·자문 및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의 대행(이하 “정보공개서 작성 등”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가맹사업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가맹거래사 자격이 있는 자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업무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맹거래사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가 업으로 가맹사업법 제28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정보공개서 작성 등을 할 수 있는지?

● 회 답

가맹거래사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는 업으로 가맹사업법 제28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정보공개서 작성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수행하는 업무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2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제4호),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제5호),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제6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제7호)을 규정하면서,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맹사업법 제28조에서는 가맹거래사가 수행하는 업무로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제1호),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제2호),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제3호),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제4호), 가맹사업 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제5호) 및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의 대행(제6호)을 규정하고 있고, 가맹사업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가맹거래사 자격이 있는 자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업무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가맹거래사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가 업으로 가맹사업법 제28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정보공개서 작성등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 행정사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과 같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법제처 2010. 4. 23. 회신 10-0024 해석례 및 법제처 2016. 8. 9. 회신 16-0329 해석례 참조).

그런데, 가맹사업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마친 자는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맹사업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가맹거래사 자격이 있는 자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사업법 제29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가 아닌 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맹거래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가맹거래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자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사업법 제28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정보공개서 작성등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 제2조제10호에서는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가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나목),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범위반 사실(다목),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라목),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마목) 등의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맹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의3제1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제1호) 및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제2호)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맹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는 가맹사업거래에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이하 “가맹본부”라 함)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가맹희망자(이하 “가맹희망자”라 함)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점사업자”라 함) 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가맹본부에 비하여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되어 2008. 2. 4. 시행된 가맹사업법 개정이유서 참조)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를 작성하고, 그 신청을 대행하는 것은 가맹사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맹거래사 본연의 업무라는 점에서 가맹거래사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가맹거래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을 말함), 「민법」, 경영학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1차시험과 가맹사업법령 및 실무,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를 시험과목으로 하는 2차시험에 합격하고, 100시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하는바(가맹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및 제30조제1항, 별표 3 참조), 경제법 및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행정사가 가맹거래사의 업무인 정보공개서 작성 등을 할 수 있다면 전문자격사로서 가맹거래사 제도를 둔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가맹거래사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는 업으로 가맹사업법 제28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정보공개서 작성등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 례 6

국가보훈처 - 인지무효확인판결의 확정으로 전상군경과의 부녀관계가 소멸한 경우 국가가 사립대학에 지급한 보조금 환수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22조 제1항제3호에서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함)으로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이하 “전상군경등”이라 함)의 자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 등”이라 함)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립인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함)이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수업료 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법 제75조제1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같은 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립대학이 전상군경의 자녀로 등록한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국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사립대학에 보조하였으나, 그 후 인지무효확인판결의 확정으로 교육지원 대상자가 전상군경과 부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사립대학으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교육지원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하는지?

● 회 답

사립대학이 전상군경의 자녀로 등록한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국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사립대학에 보조하였으나, 그 후 인지무효확인판결의 확정으로 교육지원 대상자가 전상군경과 부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사립대학으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합니다.

● 이 유

국가유공자법 제21조에서는 국가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함)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교육지원 대상자를 전상군경 등(제1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함)의 배우자(제2호),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제3호), 전몰군경 등의 자녀, 미성년 제매 및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제4호. 이하 “전몰군경 등의 자녀 등”이라 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교육기관 중 사립인 대학 등이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업료 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 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법 제75조제1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제1호),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제2호), 잘못 지급된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및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사립대학이 전상군경의 자녀로 등록한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하고, 국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사립대학에 보조하였으나, 그 후 인지무효확인판결의 확정으로 교육지원 대상자가 전상군경과 부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사립대학으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교육지원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까.

먼저, 국가유공자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국가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 등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수업료 등을 면제한 모든 교육기관에 그 면제금액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상군경 등의 자녀 또는 전몰군경 등의 자녀 등의 수업료를 면제한 사립인 대학 등으로 한정하여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기관은 공적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여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국민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는 한편, 사립인 대학등이 전상군경 등의

자녀 또는 전몰군경 등의 자녀 등의 수업료 등을 면제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국가가 수업료 등의 일부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3. 5. 15. 결정 2001헌마565 결정례 참조).

그리고, 사립인 대학 등의 장이 같은 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6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하게 되는 절차 등과 국가유공자법 제25조제3항의 입법 취지를 종합해 볼 때, 국가유공자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사립대학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전상군경 등의 자녀 또는 전몰군경 등의 자녀 등을 대신하여 사립대학에 지급하는 수업료 등이 아니라 사립대학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의 성격을 띤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사립대학이 전상군경의 자녀로 등록한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국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사립대학에 보조하였으나, 그 후 인지무효확인판결의 확정으로 교육지원 대상자가 전상군경과 부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사립대학에 대한 보조금은 사립대학이 전상군경 등의 자녀 또는 전몰군경 등의 자녀 등의 수업료 등을 면제하여야만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면, 전상군경 등의 자녀 또는 전몰군경 등의 자녀 등이 아닌 학생의 수업료 등을 면제한 사립대학은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립대학에 지급한 보조금이 있다면 그 보조금은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사립대학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75조제1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보조받은 “수업료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국가는 사립대학이 아니라 교육지원 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항에서는 같은 법이 국가유공자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환수 대상자를 “사람”으로 규정하되, 환수 대상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립대학”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면제한 수업료 등을 사립대학의 장이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환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법 제75조제1항이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 등을 직접 지급한 바 없고, 수업료 등을 면제한 바도 없는 국가보훈처장이 그에게 보조금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립대학이 전상군경의 자녀로 등록한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국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사립대학에 보조하였으나, 그 후 인지무효확인판결의 확정으로 교육지원 대상자가 전상군경과 부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사립대학으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 례 7

민원인 - 자격증 취득 전 민간 전문 분야 근무 경력이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서는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함)으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함)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초임호봉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별표 1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같은 규정 별표 2에 따라 경력을 계급(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의 상당계급을 포함함. 이하 같음)별로 산정하여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2에서는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을 규정하면서 같은 별표 유사경력란의 가목1)에서는 전문·특수경력으로써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을 100 퍼센트 이내에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비교에서는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표 비교의 위임에 따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84호를 말함. 이하 같음) 중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대한 해설”에서는 민간 전문 분야 근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을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동일한 분야”와 관련하여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 등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의 근무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의 초임호봉을 확정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관련 분야 근무경력은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 회 답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의 근무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의 초임호봉을 확정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관련 분야 근무경력도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이 유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서는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제2호),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 제1호에서는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초임호봉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1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같은 규정 별표 2에 따라 경력을 계급별로 산정하여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별표 2에서는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을 규정하면서 같은 별표 유사경력란의 가목에서는 전문·특수경력으로서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을 100퍼센트 이내에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에서는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표 비고의 위임에 따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중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대한 해설”에서는 민간 전문 분야 근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을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으로 정하고 있고, 이 경우 “동일한 분야”와 관련하여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 등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의 초임호봉을 확정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관련 분야 근무경력은 초임호봉 확정을 위한 유사경력 산정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아 수입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정규칙은 해당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례 등 참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의 호봉 산정에 관한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1항제1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규정 별표 1·별표 2의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4. 3. 회신 16-0709 해석례 참조).

그런데, 지방공무원법령의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별표 1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과 관련하여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을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으로 정하고 있는데, 자격증 등을 가지고 근무한 경우(이하 “제1유형”이라 함)에는 자격증 등의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동일한 분야”의 근무경력으로, 자격증 등 없이 근무한 경우(이하 “제2유형”이라 함)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에만 “동일한 분야”로 인정한다고 각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자격증 등의 취득 여부에 따라 제1유형과 제2유형을 구분하고, 제1유형의 경우에는 자격증 등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공무원 임용의 요건이 되었는지와는 상관없이 그러한 경력을 호봉 획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정한 반면, 제2유형의 경우에는 임용된 직류와 유사한 민간근무경력 전부가 당연히 호봉 획정에 고려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중 민간근무

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임용요건으로 한 경우로 한정하여 호봉 획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가진 민간 인력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해당 공무원의 임용과정에서 임용요건 등으로 심사되지 않은 경력까지 호봉 획정에 반영토록 하는 것은 자격증 등 취득 여부에 따라 호봉 획정을 달리 하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121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한 경력경쟁시험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은 제1유형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초임호봉 획정과 관련하여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은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 즉 자격증 등의 취득 후 그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고 상근한 경력”이라고 할 것이고, 자격증 취득 전에 자격증 취득 후 근무한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이 해당 공무원의 임용과정에서 임용요건 등으로 심사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력은 초임호봉 획정 시 유사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관련 분야 근무경력에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 례 8

민원인 -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지 여부(「행정심판법」 제5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행정심판법」 제2조제3호에서는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심판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 회 답

행정심판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 유

「행정심판법」 제2조제3호에서는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행정심판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결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재결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상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각 호에서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서는 행정소송에 관하여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현행 「행정소송법」 상 재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의 준용을 통해 재심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행정소송법」과 달리 「행정심판법」에서는 그와 같은 준용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한편,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에서는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심판의 “재결”이란 적법 절차에 따라 재결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은 재심을 통해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의 행정심판 절차를 입법자가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법률로 정할 때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대심적(對審的)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사법절차”를 준용하라는 의미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 6. 1. 결정 98헌바8 결정례 참조), 입법자가

따른 행정심판 관련 법령이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을 근거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재결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상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데, 재결도 준사법적인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하여 재결의 주체, 절차나 형식, 내용 등에 관하여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재결 자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재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절차를 통한 권리 구제가 가능하므로, 행정심판법령상 명문의 규정도 없이 재결에 대한 재심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행정심판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노동 - 비정규직 근로자

Q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다른 생산업체와 파견계약을 맺고 근로자를 파견하려고 하는데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업무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A

☞ 근로자 파견사업이 가능한 업무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 및 근로자 파견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업무는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업무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업무 또는 전화교환, 수금, 주유원, 건물 청소, 운전 등 법령으로 정하는 업무이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습니다.

☞ 위의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 파견사업이 가능합니다.

Q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사장이 자꾸 초과근무를 강요하면서 초과근무를 할 수 없으면 그만두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처벌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Q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비정규직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는 일반적인 근로자 관련 법령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보호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되지만 그 외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일반적인 근로자 관련 법령으로만 보호됩니다.

◇ 비정규직 보호법의 보호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범위

Q

파견업체에서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하는 사업주입니다.
파견근로자는 기간의 제한 없이 파견 받아 사용할 수 있나요?

A

☞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및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파견 금지 원칙

☞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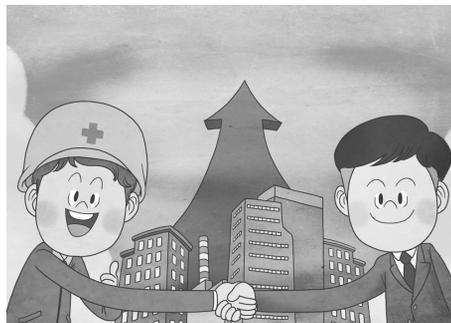
저는 사내하도급(사내하청) 근로자로 형식적인 근로계약은 수급 사업주와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원사업주의 작업지시를 받는지 3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A

☞ 수급사업주의 근로자들이 각종 작업지시서 등에 따라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수급사업주 회사의 고유 기술이나 자본 등이 업무에 투입된 바가 없으며, 원사업주가 수급사업주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근로자들은 사내하도급(사내하청) 근로자가 아닌 파견근로자로 봅니다.

◇ 파견근로자와 사내하도급(사내하청) 근로자

☞ 파견근로자는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업주가 일치하지 않는 근로자의 형태로서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



Q

기간제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육아문제로 휴직을 하고 싶는데
정규직이 아니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의 사용

☞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Q

저는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성과급과 휴가에
있어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고하려고 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 통상 근로자 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됩니다.

◇ 차별적 처우의 금지

☞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Q

저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을 근무했습니다. 언제 정규직이 될 수 있나요?

A

☞ 사업주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

☞ 사업주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에 유익한 법무상식

법 무 단 신



법무단신

이마트 '1+1' 행사 광고, 거짓·과장광고로 볼 수 없어

대형마트가 '1+1(원플러스원)' 행사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행사 직전 제품 가격을 올려 제값을 다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전단지과 신문광고를 통해 참깨와 참기름, 식용유 등 생필품에 대해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종전거래가격(동일한 상품을 과거 20일 정도의 기간 동안 판매하고 있던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당해 상품에 붙인 가격)보다 인상된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하나에 4980원 하던 참기름 제품을 두배 가량인 9800원으로 올린 뒤 '1+1'제품으로 판매한 것이다. 이마트는 또 2015년 2월 전단지에는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고 광고했지만, 일부 품목의 가격은 광고 전과 똑같았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가 가격을 두 배 가까이 올려놓고 '1+1' 상품이라면서 마치 50%를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할인율을 거짓·과장했다"며 1+1 할인 광고와 가격을 낮췄다는 허위 광고에 대해 각각 과징금 3000만원과 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고시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을 할인·엽가·점포정리·가격인하 판매 할 경우 할인을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등도 부당한 표시 광고 중 하나인 거짓·과장 표시 광고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1+1 행사를 할인판매로 봐 고시 등을 적용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1+1 행사는 1개를 사면 1개를 덤으로 준다는 증정판매의 의미로서 일반적인 할인판매와는 다름에도 공정위는 증정판매인 1+1 행사를 할인판매로 해석해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며 “1+1 행사를 할인판매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7일 이마트(소송대리인 김덕하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7누55)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3600만원의 과징금 중 ‘1+1 광고’와 관련한 과징금 3000만원 부과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마트가 상품 가격을 낮췄다고 광고한 것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들은 대체로 사업자가 상품 비교 기준가격을 표시하면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최종판매가격의 인하율을 직접 기재한 표시·광고를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이마트는 1+1 행사 광고를 하면서 상품 판매가격만 표시했을 뿐이지 할인을 기재하거나 1개당 가격을 산출해 직접 적지 않았다”며 “1+1 행사는 반드시 2개 단위로 제품을 구매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할인판매와 성격이 동일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1+1 행사가 사실상 가격 할인 효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정위 고시에서 말하는 할인판매에 해당해, 판매가격을 표시할 때 반드시 고시상 종전거래가격으로 해야 한다거나 결과적 또는 간접적으로 가격할인 효과를 가지는 1+1행사 광고까지

포괄해 규제하는 것으로 확장해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주장처럼 소비자가 1+1 행사를 50% 할인행사로 오해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행사 직전 할인가격을 기준으로 1+1 행사 상품 판매가격이 결정될 것이라는 소비자 의견은 27.6%에 불과하다”며 “65%의 소비자가 정상가격 또는 무료 상품을 제공하는 행사이므로 사용자가 결정하기 나름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단신
‘민간인 불법 사찰 가담 공무원, 배상금의 70% 부담해야

이명박 정부 시절 벌어졌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63)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가 지급한 손해배상액의 70%를 당시 사찰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최기상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이영호(53)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61)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7가합502151)에서 “이 전 비서관 등은 6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간인 불법사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 당시부터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관실은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 예방에 기여해야 할 국가기관인데도, 이를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인 불법 사찰은 공무원 개개인보다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행위에 가깝다”며 “국가도 30%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 올렸다가 사찰을 받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전 대표가 동영상을 올린 경위와 김 전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해 촛불집회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사찰했다. 김 전 대표는 곧바로 블로그를 폐쇄했으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압박이 계속되자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 지분을 헐값에 팔았다. 이후 김 전 대표는 2011년 국가와 이 전 비서관 등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해 4월 국가와 이 전 비서관 등이 김씨에게 총 5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14다76748). 이 판결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5월 김 전 대표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총 9억1000여만원을 배상한 뒤 이 전 비서관 등 7명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무단신 MRI, 비급여로 청구해 비용 더 받은 병원... 차액 물어줘야

병원이 요양급여로 처리해야 할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비급여로 처리해 환자에게 비용을 더 받았다면 촬영비용을 보전해준 보험사에 차액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의사 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재상고심(2017다2224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

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척추·관절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서씨는 2010년 10월 무릎관절을 다쳐 병원을 찾은 박모씨에게 MRI 진단을 한 후 비급여 진단료로 40만원을 청구하는 등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28명의 환자에게서 1,160여만원을 받았다. 박씨 등에게 MRI 촬영비용을 지급한 삼성화재는 “외상으로 인한 관절손상 등에 대한 MRI 촬영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씨가 비급여로 진단비를 받아 불필요한 보험금을 지출했다”며 서씨에게 73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서씨가 MRI를 비급여금액으로 지급받은 것은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의사인 서씨의 업무와 지위 등에 비춰볼 때 적어도 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며 “보험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서씨에게 16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병원 측이 진료비를 더 받은 것은 환자들에 대해 진료계약과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법령에 따른 위무를 위반한 것일 뿐, 보험사의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씨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서씨가 진료비를 청구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직접 요양급여기준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보험자들이 병원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험사가 대위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씨는 피보험자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보험사에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서씨는 다시 한번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삼성화재를 대리한 배성진(47·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기존에는 보험사와 병원은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로서는 피보험자인 환자에게 직접 소송들을 통해 MRI 요양급여와 비급여간 차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받아낼 수 밖에 없었다”며 “이번 판결로 병원의 불법행위의 직접 피해자인 환자들이 소송의 부담을 덜게 된 것은 물론, 지급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을 악용해 먼저 부당이득금을 챙긴 뒤 환자에게 실손보험 처리를 강권한 병원들의 탈법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법무단신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사고... 직진 차량, '과속' 했다면 '과실 40%'

비보호 좌회전하는 자동차와 충돌한 직진 차량이 과속 운행중이었다면 직진 차량에게도 4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지난해 1월 EF소나타 차량을 몰고 서울 마포구 서강대 정문 앞 교차로 부근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했다. 그러다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이모씨의 벤츠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 당시 이씨는 시속 약 106~110km의 과속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달리던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였다.

이 사고로 김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김씨가 운전한 차량의 보험사인 롯데손해보험은 자차 수리비로 65만원을, 이씨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차 수리비로 4,856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후 롯데손해보험은 “보험자인 김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는데 이씨가 교차로 통과 전에 일시정지 및 서행할 의무를 무시해 70%의 과실이 있다”며 삼성화재를

상대로 65만원의 70%인 45만5000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는지 여부는 과실비율을 따질 때 고려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씨는 김씨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서만 좌회전 사실을 인지해 과속을 하지 않아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며 롯데손해보험에 자신들이 차량 수리비로 지급한 4856만원을 지급하라고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운전자인 김씨의 과실이 60%, 과속 직진차량의 운전자인 이씨의 과실이 40% 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롯데손해보험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가단5234596)에서 “롯데손해보험은 삼성화재에 보험금 4856만원의 60%(2913만6000원)를 지급하고, 삼성화재는 롯데손해보험에 김씨 보험금 65만원의 40%(26만원)를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허 부장판사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다”며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운전자에게 비보호좌회전 차량을 피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하거나 서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정속 주행을 했다면 김씨와의 충돌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적어도 이 사고보다는 충돌의 정도가 훨씬 덜해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씨의 과실을 40%로 인정했다

법무단신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중 당한 부상도 업무상 재해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 도중 부상을 입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유진 판사는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 도중 골절상을 입은 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7구단 816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최씨가 댄 축구 경기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였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최씨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 근거로 △남성 직원 23명 모두 축구동호회 회원인 점 △축구경기가 매주 화요일 오전에 정기적으로 진행된 점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참석을 독려한 점 △거래처를 상대로 경기가 열린 점 등을 들었다.

A사 경영법무팀장으로 근무 중인 최씨는 지난 1월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 도중 미끄러져 왼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최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공단이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법무단신

식이장애 조현병 환자 빵 먹다 질식사, “병원 40% 책임”

식이장애를 가진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가 병원에서 간식으로 제공한 빵을 먹다 질식사 사망했다면 병원 측에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사망한 유모(당시 56세)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이 은평병원을 운영하는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32343)에서 “시는 1억6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은 유씨가 조현병과 더불어 식사속도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등의 식이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빵을 간식으로 제공한 후 이를 섭취하는 것을 제대로 관찰·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측 주장처럼 식이장애를 가진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라면 병원 측은 오히려 조금이라도 질식사 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음식물을 의료진의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삼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찰·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 측의 과실로 질식사 사고가 발생했고 유씨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국가유공자인 유씨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여명종료일(2039년 6월)까지 인천보훈지청장으로부터 최소 월240여만원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씨 스스로의 행동에 의해 질식사 사고가 발생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병원 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1979년 5월 육군에 입대한 유씨는 군 복무 중 분대원들의 구타로 조현병이 발병해 1981년 3월 의병전역했다. 이후 유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 상이

등급 1급(1항) 판정을 받고 1994년 6월부터 여러 병원을 옮겨다니며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장기간의 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유씨는 망상, 환청 등과 더불어 스스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계속되자 2014년 3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종합병원인 은평병원에 입원했다.

유씨는 같은 달 9일 병원에서 간식으로 제공한 카스테라 빵을 먹다 빵이 목에 걸렸다. 썩어가는 유씨를 발견한 간호사가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3일 뒤 질식에 따른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유씨의 유족들은 지난 5월 “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조현병과 더불어 식이장애를 가진 환자들에게 어떤 음식물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지, 이러한 환자들의 음식물 섭취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찰·감독해야 하는지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법무단신 차량 에어컨 탈취제 분사중 화재, “제조사 100% 책임”

승용차에 차량용 에어컨 탈취제를 뿌렸는데 통풍구에서 불꽃이 일어나 주변 차량까지 화재로 전소됐다면 탈취제 제조사 측에 100%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탈취제가 LP가스를 포함하고 있어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이 탈취제 제조·판매사인 A사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탈취제를 제조한 B사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가단5233128)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1억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모씨는 2015년 4월 충남 홍성의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무쏘 차량을 주차한 다음 에어컨 냄새를 없애기 위해 A사가 판매한 차량용 강력 탈취제를 뿌렸다. 그런데 갑자기 앞좌석 에어컨 통풍구에서 불꽃이 발생해 차량이 전소됐으며 주변 차량이 그을리고 주차장 일부가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위임받아 아파트 관리를 맡고 있던 C사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동부화재는 화재 피해 1억3,80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A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사 등은 “탈취제의 표시 문구에 가연성 제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위험한 사용 방식까지 예시해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조자에게 요구되는 표시상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며 “밀폐된 곳에서 열기가 완전히 식지 않은 차량 엔진 가까이에서 탈취제를 분사한 김씨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맞섰다. 또 “화재로 인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주차장에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채권자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업체가 아니다”며 “C사가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부화재는 보험자대위에 근거해 구상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보험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강 부장판사는 “탈취제는 에어컨 냄새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차량에 사용될 때는 탈취제에 표시된 사용 방법과 같이 통풍구에 주입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용 형태”라고 밝혔다.

이어 “탈취제 사용자가 차량의 시동이 꺼져 있더라도 공급되는 전원 때문에 전기 배선의 접촉 불량 등의 원인으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A사 등이 탈취제에 가연성 제품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한 주의사항만을 표시한 것은 제조물 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동부화재의 종합보험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만, C사가 수많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는 입주자들이 관리비에 포함해 지급하는 등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보험증권에 C사를 피보험자로 기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재 당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정도로 큰 규모의 화재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아파트 측의 관리상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과실상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생활에 유익한 법무상식

제·개정된 주요 법령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8.2.10.] [법률 제14873호, 2017.8.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난폭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7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8.2.9.] [법률 제14857호, 2017.8.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비사업의 조합임원이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정비사업의 상당수 용역을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상황임.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사나 용역 등 계약 시 일반경쟁 입찰을 확대하며, 관리처분계획의 검증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정비사업의 신탁업자 시행방식 도입에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한편,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 기간의 연장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여부와 관계없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에 포함함(제2조).

나.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는 계약체결 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9조, 제32조, 제136조, 제140조).

다. 여러 명이 토지·건축물을 공유한 경우,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에서도 조합 방식과 동일하게 1명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함(제39조제1항 및 제2항).

라. 사업시행계획 대비 관리처분계획상 정비사업비가 일정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은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타당성 검증을 반드시 받도록 함(제78조제2항 및 제3항).

마.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 할 수 있도록 함(제117조제2항 및 제7항).

바.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함(제120조).

사. 정비사업의 계약체결 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형벌을 감면함(제141조).

아. 정비사업과 관련한 계약체결 시 금품 또는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시·도지사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42조).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5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 중 “노후화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을 “노후화된”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시공자의 선정 등)”을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제4항(중전의 제1항)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을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2항) 중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3항) 중 “건설업자”를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을 “제4항부터 제8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을 “제2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합원은”을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조합설립인가”를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78조제2항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인가 신청된”을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타당성 검증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가 제5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늘어나는 경우

2.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가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총액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늘어나는 경우

3.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8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8조제3항”을 “제78조제4항”으로 한다.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없다고”를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부담”을 “부담, 조정기간 연장”으로 한다.

제11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9조제1항”을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제120조제1호 중 “시공자의 공사비”를 “제29조에 따른 계약금액”으로 한다.

제126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4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을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로 한다.

제13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제136조제2호(중전의 제1호) 중 “제29조를”을 “제29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경쟁입찰의 방법”을 “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자

제140조제2항제2호(중전의 제1호) 중 “제78조제4항”을 “제78조제5항”으로 한다.

제141조 및 제14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1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가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42조(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9조제6항 중 “제78조제4항”을 “제7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 중 “제29조제1항,”을 “제29조제4항,”으로,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을 “제29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7항”으로, “제7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을 “제7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사 등 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공사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공사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수자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자수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법

[시행 2017.11.10.] [법률 제14866호, 2017.8.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공급·거래 관련 시장상황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분양 등이 과열 또는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거나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 또는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6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해당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1.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및 주택도시보증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주택 분양 및 거래 등과 관련된 금융·세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시장의 안정 또는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

-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해제”로 본다.
- ⑦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⑧ 제7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단서 중 “외의 지역으로서”를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3호) 본문 중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를 “공공택지”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지위는 제외한다”를 “지위 및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외한다”로 한다.

2.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만, 제63조의 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외한다.

제64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준비행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는 이 법 시행일에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전매제한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통계법

[시행 2018.2.10.] [법률 제14843호, 2017.8.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통계응답자에게 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통계응답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작성되는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4843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제18조제2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자료제출명령)”을“(자료제출요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명령을”을 “요구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제출명령을”을 “제출요구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자료제출명령”을 “자료제출요구”로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자료에 의하여 지정통계의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의 제목“(실지조사)”를“(실지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이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제41조제4항제2호 중 “제25조제3항”을 “제2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6조제2항”을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제출요구 및 실지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통계를 작성하거나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8.2.10.] [법률 제14867호, 2017.8.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5년 단위의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도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동일한 사항에 관한 계획을 중복하여 수립하는 것은 행정력 및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집행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는 바, 법정 계획의 일관성 및 실효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67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 제목“(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을“(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5년 단위의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를“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종합계획”을“제1항에 따른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종합계획”을“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